■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7.>

[] 저작재산권 [] 설정
[] 배타적발행권 [] 양도
[] 출판권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여러 건 등록: 총 건)		
	② 종 류		※ 뒤쪽의 저작물 분류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등록의무자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⑩ 국 적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⑮ 성 명 (법인명)			⑯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⑰ 주 소				
	⑱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⑲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5,000원
방문·우편: 40,000원 인 터 넷: 30,000원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저작재산권: 48,240원
배타적발행권·출판권: 24,0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예시)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DVD, USB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CD, DVD, USB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DVD, USB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DVD, USB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등록하려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 총 6건)

◆ 여러 건 등록 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② 종류: 위 저작물 분류표를 참고하여 분류 및 종류를 순서대로 함께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별지 참조'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기재합니다.

예) '어문저작물>시>동시', '음악저작물>대중가요>작사·작곡 , 미술저작물>응용미술>캐릭터

③, ⑨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 등록권리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배타적발행권 설정자,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등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동일인에게 설정·이전 등 변동이 되어야 하며, 그 설정·이전 등의 등록 사항은 그 사항별로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권리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